

대구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2가합2051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고 1. 주식회사 A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3.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변론 종결 2024. 7. 25.

판결 선고 2024. 9. 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906,242,303원 및 그중 638,771,088원에 대하여는 2022. 6. 30.부터, 257,569,700원에 대하여는 2022. 7. 26.부터 각 2022. 8. 26.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사이에 2021. 11.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22. 1.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 나. 피고 주식회사 A에게,
 -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21. 11. 8. 접수 제94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 피고 주식회사 C는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22. 1. 28. 접수 제7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축산물(생육, 지육)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축산물의 도축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8. 4. 27.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 칠곡지점에서 대출받은

3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255,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8. 4. 27.부터 2019. 4. 26.까지로 각 정하여, 2018. 6. 20. 피고 A이 위 은행에서 대출받은 3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285,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8. 6. 20.부터 2019. 6. 19.로 각 정하여, 2020. 6. 4. 피고 A이 위 은행에서 대출받은 1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90,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20. 6. 4.부터 2021. 6. 3.까지로 각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 칠곡지점장에게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2022. 4. 22., 2022. 6. 17. 및 2022. 6. 3.로 각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21. 4. 29.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E지점에서 대출받은 30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255,0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21. 4. 29.부터 2022. 4. 28.까지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D은행 E지점장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 A이 2022. 3. 18.경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22. 6. 30. 중소기업은행에 위 2018. 4. 27.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금 255,000,000원, 이자 3,651,076원, 합계 258,651,076원, 위 2018. 6. 20.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금 285,000,000원, 이자 3,687,040원, 합계 288,687,040원, 위 2020. 6. 4.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금 90,000,000원, 이자 1,432,972원, 합계 91,432,972원, 도합 638,771,0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원고는 2022. 7. 26. D에 위 2021. 4. 29.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금 255,000,000원, 이자 2,569,700원, 합계 257,569,7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절차

1) 피고 A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D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인 2019. 9.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인 2020. 3. 2.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2020. 9.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통틀어 'D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각 마쳐져 있다.

2)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21. 11. 8. 접수 제9404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피고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22. 1. 28. 접수 제 752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4) 원고가 피고 A의 보증인으로서 2022. 7. 26. D에 257,569,700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D 명의의 위 2020. 9.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22. 8. 2.자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5) 한편, D이 2022. 5.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2022. 5.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가, D이 2024. 3. 13.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6) 위 경매절차에서 실시한 감정에 따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022. 7. 13. 기준으로 합계 3,387,696,2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1) 대위변제금 원고가 피고 A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으로 2022. 6. 30.

중소기업은행에 638,771,088원, 2022. 7. 26. D에 257,569,700원을 각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위약금 신용보증기금법 제34조에 의하면 주채무자가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위약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 A이 부담하는 위약금이 1,858,33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다.

3) 채권보전비용 피고 A이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여야 할 신용보증약정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조치비용이 8,043,185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다.

4)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이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율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9. 4. 1. 이후로 연 8%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다.

나.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A은 원고에게 906,242,303원(= 중소기업은행 대위변제금 638,771,088원 + D 대위변제금 257,569,700원 + 위약금 1,858,330원 + 채권보전비용 8,043,185원) 및 그중 중소기업은행 대위변제금 638,771,088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22. 6. 30.부터, D 대위변제금 257,569,700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22. 7.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날인 2022. 8. 26.까지는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3. 피고 B, C에 대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사실, 피고 A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A의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C에 대하여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 A이 2022. 3.경부터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보증인인 원고가 중소기업은행, D에 각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9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에 대하여 부담하던 대출금 채무는 합계 2,377,600,000원이고, 위 대출금 채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합계 2,460,000,000원의 D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22. 7. 26. D에 257,569,700원을 변제하여 D 근저당권 중 일부를 이전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2022. 7. 13. 기준으로 합계 3,387,696,250원으로 감정평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가액은 2022. 7. 13. 기준 감정평가액인 3,387,696,250원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중 257,569,700원 부분은 원고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D 근저당권 중 일부를 이전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다고 보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중 위 257,569,7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2. 7. 13. 기준 감정평가액은 3,387,696,25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8, 9호증, 을다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G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22. 1. 25. 당시 피고 A이 D에 대하여 2,440,986,926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700,000,000원, G은행에 대하여 550,800,000원의 각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 B에 대하여 400,000,000원, 피고 C에 대하여 63,546,900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가액은 위 감정평가액과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피고 A의 소극재산은 합계 4,155,333,826원으로 그 적극재산인 3,387,696,250원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피고 C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에 따라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피고 A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라) 피고 C의 선의항변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는, 피고 A이 육가공판매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피고 A에 도축 용역을 계속 제공하기로 하여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다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C는 2016. 12.경부터 피고 A에 돼지를 도축하는 용역업무를 제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1. 10.경 경북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됨에 따라 경북 지역 내 상당수의 육가공업체들이 돼지 매입대금이나 도축 수수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는 2021. 10.경 이후로 피고 A에 대한 미수금이 늘어나자, 피고 A에 당시 미수금과 장래 추가 발생할 도축 수수료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당시 피고 A에 육가공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A은 피고 C에 대하여 부담하던 기존 도축 수수료 채무의 이행기한을 유예받기 위하여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고 피고 C에 대해서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참조).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C는,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로 D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이 합계 2,560,000,000원에 달하였으므로, 피고 C는 그 무렵 피고 A의 채무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② 피고 C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부터 경북 지역 내 육가공업체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A에 대한 미수금 또한 늘어나고 있었던 점, ③ 피고 C로서는 피고 A이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에 비추어 다른 일반채권자들이 존재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 내지 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목적물이 부동산이고 사해행위가 근저당권설정행위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해행위인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는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채성호

판사박소민

판사배종빈

별지